

#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

## I 건설폐기물 처리업 관련 정책 및 제도

### 가 습식선별시설에 대한 대기오염배출시설 신고 등 조치

- [주요내용] 습식선별시설이 대기오염 배출시설에 편입되면서 해당 시설을 보유하고있는 사업장에서는 '21.12.31일까지 대기오염 배출 시설 신고 등의 조치 필요
- [관련규정]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3
- [시행일] 2020년 12월 30일

### 나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제도 도입

- [주요내용]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등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  - ※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빙서류 대체(처리실적 확인서 등) 방안 논의 중
- [관련규정] 「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」 제27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# 다 건설폐기물 분별해체제도 도입

- [주요내용]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일정한 구조,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건설 폐기물을 분별해체 하도록 함

#### <적용대상 구조물 및 폐기물(안)>

- (대상 구조물)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바닥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
- (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) 건설폐토석, 건설오니, 혼합건설폐기물, 그 밖의 폐기물 등을 제외한 총 14종의 건설폐기물

※ 지난 '20.9.7일 입법예고 된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개정(안)에 따른 내용이며 공포 시 변경될 수 있음

- [관련규정] 「건설폐기물법」 제4조
- [시행일] 2021년 4월 17일

## II

### 고용관련 정책 및 제도

#### 가 최저임금 시급 인상

- [주요내용] '21년도 최저임금 시급 8,720원('20년 대비 130원 인상)
- [관련규정]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## 나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

- [주요내용]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소속된 외국인 근로자(E-9, H-2)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

##### ※ 연도별 적용대상 사업장 확대

적용대상	시행일
○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	'21.1.1
○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	'22.1.1
○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	'23.1.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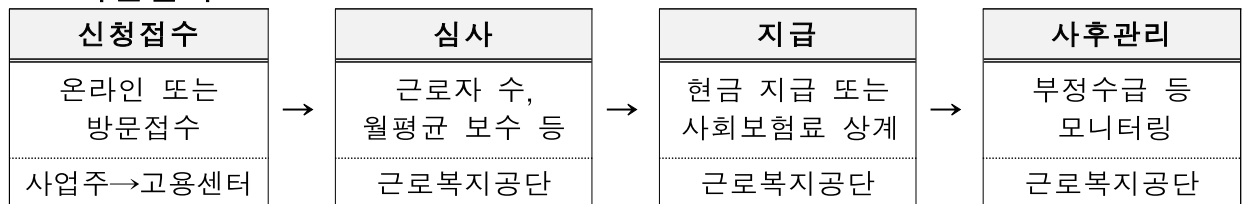
- [관련규정]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의2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## 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

- [주요내용]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 규모별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\*

\* (5인 미만) 7만원/월, (5-30인 미만) 5만원/월, 주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

##### ※ 지원절차



- [관련규정] 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29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# Ⅲ

## 조세 관련 정책 및 제도

### 가

####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

- [주요내용]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('20.12.31限 → '22.12.31限)

##### ※ 사업장별 감면비율

구분		감면비율
소기업	수도권 내 업체	○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% 감면
	수도권 외 업체	○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% 감면
중기업	수도권 외 업체	○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5% 감면

- [관련규정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# 나

####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적용

- [주요내용] 지원대상·지원수준이 상이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통합·재설계하여 '통합투자세액공제' 신설

##### ※ 통합투자세액공제 주요내용

구분	주요내용
공제대상	○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*(단, 토지, 건물, 차량, 비품 등 제외) * 건설폐기물 처리시설(파·분쇄시설, 선별시설),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
공제방식	○ 기본공제(당해년도 투자액) + 추가공제(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초과분) ※ 공제율 : (기본공제율) 중·소기업 10%, (추가공제율) 3%

- [관련규정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24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# 다

####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

- [주요내용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
- [관련규정]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14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IV

기타 정책 및 제도

가

2021년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

- [주요내용]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산업에 대한 장기·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의 성장기반 등 강화

<환경정책자금융자 지원사업 주요 내용>

□ 접수기간 : '21년 1월초 1분기 신청·접수 공고 예정(공고 시 별도 홍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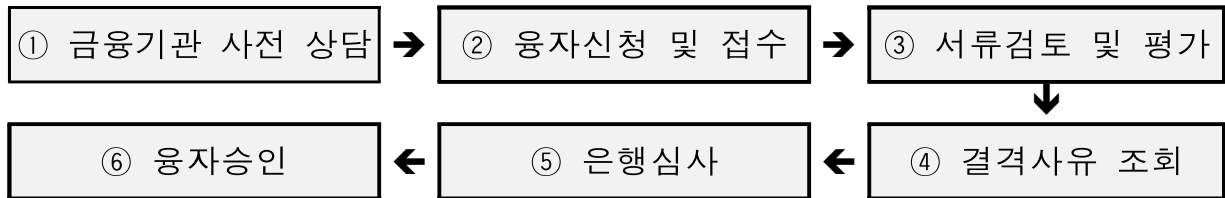
□ 지원대상 및 조건

사업명	지원대상*	지원분야	적용범위	지원방식	지원한도	대출기간**
환경산업육성자금	중·소, 중견기업	시설설치 자금	신기술 등 시설 설치 시 소요비용	담보대출	최대 80억 (중복지원 시 최대 100억)	3년 거치 7년 상환 (10년 이내)
환경개선자금		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	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시 소요비용			

\* '20년도 1~3분기 환경정책자금 지원업체도 신청 가능(단, 기 지원받은 시설 제외)

\*\* 대출금리 : 분기별 변동금리(2021년 1분기 현재 1.00%)

□ 지원절차



□ 문의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

- 환경산업육성자금(02-2284-1731 ~ 1736, 1738) / 환경개선자금(02-2284-1732, 1741)

- [관련규정]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3조의4

나

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

- [주요내용] 도시부(주거·상업·공업지역)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/h,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/h로 변경
- [관련규정]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 제19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

## 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

- [주요내용]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 대하여 명절,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

### <휴일 근로가 필요한 경우>

- (대체휴일 지정)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대체
- (가산수당 지급) 대체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\*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 지급

\* 1일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% 가산

- [관련규정] 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
- [시행일] 2021년 1월 1일